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 1. 25.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경과

○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필요성
 - 아동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개인)에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위탁사무 내용

- 남양주시청 개나리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 아동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육
 -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 공급, 청결위생관리 철저, 안전사고 예방
 - 적정한 시설 관리 및 교사 관리 등

3)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남양주시청 개나리어린이집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시설규모: 960.8m²
- 개 원 일: 2003. 3. 2.

- 4) 민간위탁 기간: 3년(2024. 3. 1. ~ 2027. 2. 28.)
- 5)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 경쟁 모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참고자료 : 붙임2

다. 관련부서 : 인사과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2월 29일에 만료 예정인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개나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4 조에 따라 2003년 3월에 설치되어 20년 동안 계속해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해왔으며, 그동안 법리 해석의 오인 등으로 인하여 의회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민간 위탁하는 것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연간 83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붙임1 참고 자료

직장어린이집 현황

현 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개 원 일
 남양주시청 개나리어린이집	남양주시청 제1청사 (남양주시 경춘로 1037)	960.8㎡ (지하1층~지상2층)	2003년 3월

○ 운영방식: 위탁운영

○ 수 탁 자: 채움터협동조합

- 계약기간

▶ 2018. 3. 1. ~ 2021. 2. 28.(3년) 공개모집

▶ 2021. 3. 1. ~ 2024. 2. 29.(3년) 재계약

○ 보육 정원: 99명

○ 종사자 수: 2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3명, 보조교사 3명, 조리사 2명, 청소원 1명, 육아휴직 1명

(2023. 12월 기준)

호레어드	원아		교실	및 O 크 7 l O l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출생연도	현원	정원	(반)	발) 보육교직원 - 보육교직원		배치비율	법정비율
2022년생	5명	6명	1교실 (2반)	2명	보조교사 1	1:2.5	1:3
2021년생	18명	20명	2교실 (4반)	4명		1:4.5	1:5
2020년생	14명	14명	1교실 (2반)	2명		1:7	1:7
2019년생	13명	19명	2교실 (2반)	2명	누리보조2	1:6.5	1:15
2018년생	10명	20명	1교실 (1반)	2명		1:5	1:20
2017년생	8명	20명	1교실 (1반)	1명		1:8	1:20
계	68명	99명	8교실 (12반)	13명	3명		-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u>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u>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

- 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위탁기간의 변경
-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3.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5. 위탁기간
- 6. 수탁기관 선정방식
-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남양주시 민간 위탁사무 수탁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남양주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한다.